

의정활동보고서

제167회 임시회 (2002. 4. 10 ~ 4. 1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지방자치 부활 3대 의회를 거치면서 여러가지로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제6대의회 의원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고통스러웠던 IMF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계속되던 발전노조의 파업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노사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월드컵 대회를 비롯하여 이어지는 U대회,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특사의 방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연결, 이산가족 교환방문,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탁해진 국내 정치상황과, 최근 국제원유가의 급등, 선진국들의 통상압력 등으로 성장기조의 경제를 해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과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민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시·군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정이지만 시한내에 처리되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정된 회기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4. 10

경상북도의회의장 柳 仁 熙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4. 기타사항

부 록

☐ 조례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67회 임시회는 2002년 4월 10일 개최하여 4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5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4월 1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한 후 휴회하였다.

회기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에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6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요구 : 김응규 의원 외 19인

다. 집회 공고 : 2002. 3. 30

라. 집 회 일 : 2002. 4. 1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2. 4. 10 ~ 4. 17 (8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22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자치 행정	교육 사회	농수산	산업 관광	건 설	예결 특위	양민 특위
금회	5	2		2	1					
누계	540	45	79	88	92	66	61	47	61	1

※ 누계는 제6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2.4.10(수) 11:00	1. 제16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 2.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제 1 차 원안가결
4. 17 (수) 11:00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 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6.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4.10(수) 12:30	☐ 업무협의 - 제168회임시회 회기협의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 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4. 17(수) 13: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2.4.10(수) 10:00	☐ 조례안 심사 1.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와선거구 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2002.4.11(목) 14:00	☐ 조례안 심사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 2 차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4.16(화) 10:30	☐ 조례안 심사 1.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1 차 원안가결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4.11(목) ~ 12(금)	☐ 현지 확인 - 고령쌍림수출단지(안림영농조합법인)	

<건설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2.4.15(월) ~ 16(화)	☐ 현지 확인 - 건설사업소북부지소(안동시 남산면 이천리) - 하리우회도로개설공사(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 청리~옥성간도로확·포장공사(상주시 청리면)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7 (398)	7 (398)	7 (341)	(56)	(1)			
조 례 안	소 계	6 (234)	6 (234)	6 (234)	(36)	(1)			
	의 회 제 안	1 (13)	1 (13)	1 (11)	(2)				
	도지사 제 출	5 (168)	5 (168)	5 (138)	(29)	(1)			
	교육감 제 출	1 (53)	1 (53)	1 (48)	(5)				
예 산 안		(24)	(24)	(8)	(17)				
동의·승인		1 (66)	1 (66)	1 (65)	(1)				
건 의 안		(16)	(16)	(16)					
결 의 안		(17)	(17)	(16)	(1)				
기 타 안		(39)	(39)	(38)	(1)				

※ • ()내는 제6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7 (442)	7 (430)	6 (234)	(47)	(77)	(16)	1 (18)	(38)	(4)	(4)	(4)	
의회운영	2 (22)	2 (20)	1 (5)	(3)	(4)		1 (3)	(6)	(2)			
기 획	(30)	(30)	(14)	(3)	(12)	(1)						
자치행정	4 (99)	4 (94)	4 (74)	(3)	(14)	(1)	(2)			(3)	(2)	
교육사회	1 (100)	1 (98)	1 (77)	(5)	(13)	(1)	(1)	(1)		(1)	(1)	
농 수 산	(23)	(22)	(11)	(3)	(5)	(3)			(1)			
산업관광	(46)	(44)	(29)	(3)	(9)	(3)			(1)		(1)	
건 설	(25)	(25)	(16)	(3)	(3)	(1)	(2)					
특 별	(37)	(37)		(24)	(8)			(5)				
본회의	(59)	(59)	(8)		(9)	(6)	(10)	(26)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	4	4	

※ 누계는 제6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244)	2 (42)	(12)	(17)	1 (73)	(12)	1 (16)	1 (21)	(27)	(24)
의회운영										
기 획	(3)	(1)			(2)					
자치행정	3 (40)	2 (31)	(1)		1 (4)		(1)			(3)
교육사회	1 (40)		(3)	(1)	(2)	(12)		1 (13)	(1)	(8)
농 수 산	(41)	(2)	(1)	(6)	(9)		(1)		(20)	(2)
산업관광	1 (41)	(3)	(5)	(5)	(4)		1 (12)	(8)	(2)	(2)
건 설	(74)	(5)	(2)	(5)	(52)		(2)		(4)	(4)
특별위원회	(5)									(5)

※ ()안은 6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39)	(237)	(2)			5 (5)
의회운영						
기 획	(3)	(3)				
자치행정	(37)	(36)	(1)			3 (3)
교육사회	(39)	(38)	(1)			1 (1)
농 수 산	(41)	(41)				
산업관광	(40)	(40)				1 (1)
건 설	(74)	(74)				
특별위원회	(5)	(5)				

※ ()안은 제6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2. 4. 1)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자치행정 (2002. 4. 4)
경상북도지사 (2002. 4. 4)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2002. 4. 4)
경상북도지사 (2002. 4. 4)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2002. 4. 4)
경상북도지사 (2002. 4. 4)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 (2002. 4. 4)
경상북도지사 (2002. 4. 10)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사회 (2002. 4.10)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2. 3.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2002. 3. 25
2002. 3.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 용조례중개정조례	2002. 3. 25
2002. 3.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2. 3. 25
2002. 3.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	2002. 3. 25
2002. 3.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	2002. 3. 25
2002. 3. 15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002. 3. 25
2002. 3. 15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002. 4. 1

3.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건설 위원회	3. 26	포항, 청송, 영양	○ 해빙기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 포항 송내교 - 청송 안덕교 - 영양 북수1교 *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기공식 참석

4. 기타사항

- 구제역발생 가상훈련(CPX) 참석
 - 일 시 : 2002. 3. 22(금) 14:00
 - 장 소 : 구미 농업기술센터
 - 참 석 : 이정백 농수산위원장
-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기공식
 - 일 시 : 2002. 3. 26(화) 14:00
 - 장 소 :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
 - 참 석 : 이상천 부의장(축사), 건설위원
- 제1회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 행사
 - 일 시 : 2002. 3. 27(수) 13:30
 - 장 소 : 농업인 회관
 - 참 석 : 윤신부, 이광언 의원
- 2002 경상북도의정회 정기총회
 - 일 시 : 2002. 3. 28(목) 12:1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부 록

○ 조 례 안 : 6건

□ 조례안 : 6건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2. 4. 10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

<개정 '2002. 4. .>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포 항 시		
포 항 시	35	
홍해읍제1선거구	1	매산리, 북송리, 마산리, 약성리, 학성리, 성내리, 중성리, 망천리, 남송리, 용곡리, 양백리, 덕성리, 덕장리, 용전리, 용천리, 금장리, 홍안리, 칠포리, 오도리, 옥성1리, 곡강1리
홍해읍제2선거구	1	남성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초곡리, 학천리, 성곡리, 이인리, 대련리, 옥성2리, 곡강2리, 곡강3리
연일읍제1선거구	1	괴정리, 동문리, 오천리, 인주리, 우북리, 생지1리, 생지2리
연일읍제2선거구	1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중명리, 중단리, 택전리, 생지3리
오천읍제1선거구	1	문덕리, 향사리, 진전리, 갈평리, 문충리, 용산리, 광명리, 세계리
오천읍제2선거구	1	원리, 용덕리, 구정리
신광면선거구	1	신광면 일원
청하면선거구	1	청하면 일원
송라면선거구	1	송라면 일원
기계면선거구	1	기계면 일원
죽장면선거구	1	죽장면 일원
기북면선거구	1	기북면 일원
중앙동선거구	1	중앙동 일원
학산동선거구	1	학산동 일원
양학동선거구	1	양학동 일원
죽도1동선거구	1	죽도1동 일원
죽도2동선거구	1	죽도2동 일원
용흥동선거구	1	용흥동 일원
우창동선거구	1	우창동 일원
두호동선거구	1	두호동 일원
장량동선거구	1	장량동 일원
환여동선거구	1	환여동 일원
구룡포읍선거구	1	구룡포읍 일원
대송면선거구	1	대송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동해면선거구	1	동해면 일원
장기면선거구	1	장기면 일원
대보면선거구	1	대보면 일원
상대1동선거구	1	상대1동 일원
상대2동선거구	1	상대2동 일원
해도1동선거구	1	해도1동 일원
해도2동선거구	1	해도2동 일원
송도동선거구	1	송도동 일원
청림동·제철동선거구	1	청림동·제철동 일원
효곡동선거구	1	효곡동 일원
대이동선거구	1	대이동 일원
경 주 시		
경 주 시	24	
안강읍제1선거구	1	안강리, 양월리, 육동리, 노당리, 근계리, 갑산리, 대동리, 검단리, 사방리, 청령리
안강읍제2선거구	1	산대리, 옥산리, 하곡리, 강교리, 두류리
감포읍선거구	1	감포읍 일원
건천읍선거구	1	건천읍 일원
외동읍선거구	1	외동읍 일원
양북면선거구	1	양북면 일원
양남면선거구	1	양남면 일원
내남면선거구	1	내남면 일원
산내면선거구	1	산내면 일원
서면선거구	1	서면 일원
현곡면선거구	1	현곡면 일원
강동면선거구	1	강동면 일원
천북면선거구	1	천북면 일원
중부동선거구	1	중부동 일원
성동동선거구	1	성동동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황오동선거구	1	황오동 일원
성건동선거구	1	성건동 일원
탑정동·황남동선거구	1	탑정동·황남동 일원
월성동선거구	1	월성동 일원
선도동선거구	1	선도동 일원
불국동·보덕동선거구	1	불국동·보덕동 일원
용강동선거구	1	용강동 일원
황성동선거구	1	황성동 일원
동천동선거구	1	동천동 일원
김 천 시		
김 천 시	22	
아포읍선거구	1	아포읍 일원
농소면선거구	1	농소면 일원
남면선거구	1	남면 일원
개령면선거구	1	개령면 일원
감문면선거구	1	감문면 일원
어모면선거구	1	어모면 일원
봉산면선거구	1	봉산면 일원
대항면선거구	1	대항면 일원
감천면선거구	1	감천면 일원
조마면선거구	1	조마면 일원
구성면선거구	1	구성면 일원
지례면선거구	1	지례면 일원
부항면선거구	1	부항면 일원
대덕면선거구	1	대덕면 일원
증산면선거구	1	증산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용암동선거구	1	용암동 일원
성남동선거구	1	성남동 일원
평화동선거구	1	평화동 일원
양금동선거구	1	양금동 일원
대신동선거구	1	대신동 일원
대곡동선거구	1	대곡동 일원
지좌동선거구	1	지좌동 일원
안 동 시		
안 동 시	23	
일직면선거구	1	일직면 일원
남선면선거구	1	남선면 일원
임하면선거구	1	임하면 일원
길안면선거구	1	길안면 일원
임동면선거구	1	임동면 일원
예안면선거구	1	예안면 일원
중구동선거구	1	중구동 일원
명륜동선거구	1	명륜동 일원
용상동선거구	1	용상동 일원
서구동·법상동선거구	1	서구동·법상동 일원
태화동선거구	1	태화동 일원
풍산읍선거구	1	풍산읍 일원
와룡면선거구	1	와룡면 일원
북후면선거구	1	북후면 일원
서후면선거구	1	서후면 일원
풍천면선거구	1	풍천면 일원
남후면선거구	1	남후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도산면선거구	1	도산면 일원
녹전면선거구	1	녹전면 일원
평화동선거구	1	평화동 일원
안기동선거구	1	안기동 일원
옥동선거구	1	옥동 일원
송하동선거구	1	송하동 일원
구 미 시		
구 미 시	24	
고아읍제1선거구	1	관심리, 이례리, 오로리, 대망리, 파산리, 신촌리, 황산리, 횡산리, 외예리, 내예리, 향곡리, 예강리
고아읍제2선거구	1	원호리, 문성리, 다식리, 괴평리, 송림리, 봉한리
선산읍선거구	1	선산읍 일원
무을면선거구	1	무을면 일원
옥성면선거구	1	옥성면 일원
도개면선거구	1	도개면 일원
해평면선거구	1	해평면 일원
산동면선거구	1	산동면 일원
장천면선거구	1	장천면 일원
송정동·광평동선거구	1	송정동·광평동 일원
원평1동 선거구	1	원평1동 일원
원평2동선거구	1	원평2동 일원
지산동·도량동선거구	1	지산동·도량동 일원
선주원남동선거구	1	선주원남동 일원
형곡1동선거구	1	형곡1동 일원
형곡2동선거구	1	형곡2동 일원
신평1동·신평2동선거구	1	신평1동·신평2동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비산동·공단1동선거구	1	비산동·공단1동 의원
공단2동선거구	1	공단2동 의원
상모사곡동선거구	1	상모사곡동 의원
임오동선거구	1	임오동 의원
인동동선거구	1	인동동 의원
진미동선거구	1	진미동 의원
양포동선거구	1	양포동 의원
영 주 시		
영 주 시	19	
풍기읍선거구	1	풍기읍 의원
이산면선거구	1	이산면 의원
평은면선거구	1	평은면 의원
문수면선거구	1	문수면 의원
장수면선거구	1	장수면 의원
안정면선거구	1	안정면 의원
봉현면선거구	1	봉현면 의원
순흥면선거구	1	순흥면 의원
단산면선거구	1	단산면 의원
부석면선거구	1	부석면 의원
상망동선거구	1	상망동 의원
하망동선거구	1	하망동 의원
영주1동선거구	1	영주1동 의원
영주2동선거구	1	영주2동 의원
휴천1동선거구	1	휴천1동 의원
휴천2동선거구	1	휴천2동 의원
휴천3동선거구	1	휴천3동 의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가흥1동선거구 가흥2동선거구	1 1	가흥1동 일원 가흥2동 일원
영 천 시		
영 천 시	15	
금호읍선거구 청통면선거구 신녕면선거구 화산면선거구 화북면선거구 화남면선거구 자양면선거구 임고면선거구 고경면선거구 북안면선거구 대창면선거구 동부동선거구 중앙동선거구 서부동선거구 완산동·남부동선거구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금호읍 일원 청통면 일원 신녕면 일원 화산면 일원 화북면 일원 화남면 일원 자양면 일원 임고면 일원 고경면 일원 북안면 일원 대창면 일원 동부동 일원 중앙동 일원 서부동 일원 완산동·남부동 일원
상 주 시		
상 주 시	23	
함창읍선거구 사벌면선거구 중동면선거구 낙동면선거구 청리면선거구	1 1 1 1 1	함창읍 일원 사벌면 일원 중동면 일원 낙동면 일원 청리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공성면선거구	1	공성면 일원
외남면선거구	1	외남면 일원
내서면선거구	1	내서면 일원
모동면선거구	1	모동면 일원
모서면선거구	1	모서면 일원
화동면선거구	1	화동면 일원
화서면선거구	1	화서면 일원
화북면선거구	1	화북면 일원
외서면선거구	1	외서면 일원
은척면선거구	1	은척면 일원
공검면선거구	1	공검면 일원
이안면선거구	1	이안면 일원
화남면선거구	1	화남면 일원
동문동선거구	1	동문동 일원
남원동선거구	1	남원동 일원
북문동선거구	1	북문동 일원
계림동선거구	1	계림동 일원
동성동·신흥동선거구	1	동성동·신흥동 일원
문 경 시		
문 경 시	13	
문경읍선거구	1	문경읍 일원
가은읍선거구	1	가은읍 일원
영순면선거구	1	영순면 일원
산양면선거구	1	산양면 일원
호계면선거구	1	호계면 일원
산북면선거구	1	산북면 일원
동로면선거구	1	동로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마성면선거구	1	마성면 일원
농암면선거구	1	농암면 일원
모전동선거구	1	모전동 일원
중앙동선거구	1	중앙동 일원
신흥동선거구	1	신흥동 일원
점촌동·신평동선거구	1	점촌동·신평동 일원
경 산 시		
경 산 시	16	
하양읍제1선거구	1	금락리, 부호리, 은호리, 남하리, 청천리, 환상리, 대조리
하양읍제2선거구	1	동서리, 도리리, 서사리, 양지리, 사기리, 대곡리, 교리, 한사리, 대학리
진랑읍제1선거구	1	신상리, 선화리, 다문리, 아사리, 시문리, 현내리, 마곡리, 광석리, 신제리, 대원리, 속초리, 안촌리, 황제리, 당곡리, 가야리
진랑읍제2선거구	1	보인리, 봉회리 북리, 부기리, 양기리, 상림리, 내리리, 문천리,坪사리, 平사리
서부동제1선거구	1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서부동제2선거구	1	중산동, 정평동
와촌면선거구	1	와촌면 일원
자인면선거구	1	자인면 일원
용성면선거구	1	용성면 일원
남산면선거구	1	남산면 일원
압량면선거구	1	압량면 일원
남천면선거구	1	남천면 일원
중앙동선거구	1	중앙동 일원
동부동선거구	1	동부동 일원
남부동선거구	1	남부동 일원
북부동·중방동선거구	1	북부동·중방동 일원
군 위 군		
군 위 군	8	
군위읍선거구	1	군위읍 일원
소보면선거구	1	소보면 일원
효령면선거구	1	효령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부계면선거구	1	부계면 일원
우보면선거구	1	우보면 일원
의흥면선거구	1	의흥면 일원
산성면선거구	1	산성면 일원
고로면선거구	1	고로면 일원
의 성 군		
의 성 군	18	
의성읍선거구	1	의성읍 일원
단촌면선거구	1	단촌면 일원
점곡면선거구	1	점곡면 일원
옥산면선거구	1	옥산면 일원
사곡면선거구	1	사곡면 일원
춘산면선거구	1	춘산면 일원
가음면선거구	1	가음면 일원
금성면선거구	1	금성면 일원
봉양면선거구	1	봉양면 일원
비안면선거구	1	비안면 일원
구천면선거구	1	구천면 일원
단밀면선거구	1	단밀면 일원
단북면선거구	1	단북면 일원
안계면선거구	1	안계면 일원
다인면선거구	1	다인면 일원
신평면선거구	1	신평면 일원
안평면선거구	1	안평면 일원
안사면선거구	1	안사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청 송 군		
청 송 군	8	
청송읍선거구	1	청송읍 일원
부동면선거구	1	부동면 일원
부남면선거구	1	부남면 일원
현동면선거구	1	현동면 일원
현서면선거구	1	현서면 일원
안덕면선거구	1	안덕면 일원
파천면선거구	1	파천면 일원
진보면선거구	1	진보면 일원
영 양 군		
영 양 군	7	
영양읍선거구	2	영양읍 일원
입암면선거구	1	입암면 일원
청기면선거구	1	청기면 일원
일월면선거구	1	일월면 일원
수비면선거구	1	수비면 일원
석보면선거구	1	석보면 일원
영 덕 군		
영 덕 군	9	
영덕읍선거구	1	영덕읍 일원
강구면선거구	1	강구면 일원
남정면선거구	1	남정면 일원
달산면선거구	1	달산면 일원
지품면선거구	1	지품면 일원
축산면선거구	1	축산면 일원
영해면선거구	1	영해면 일원
병곡면선거구	1	병곡면 일원
창수면선거구	1	창수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청 도 군		
청 도 군	9	
청도읍선거구	1	청도읍 일원
화양읍선거구	1	화양읍 일원
각남면선거구	1	각남면 일원
풍각면선거구	1	풍각면 일원
각북면선거구	1	각북면 일원
이서면선거구	1	이서면 일원
운문면선거구	1	운문면 일원
금천면선거구	1	금천면 일원
매전면선거구	1	매전면 일원
고 령 군		
고 령 군	8	
고령읍선거구	1	고령읍 일원
덕곡면선거구	1	덕곡면 일원
운수면선거구	1	운수면 일원
성산면선거구	1	성산면 일원
다산면선거구	1	다산면 일원
개진면선거구	1	개진면 일원
우곡면선거구	1	우곡면 일원
쌍림면선거구	1	쌍림면 일원
성 주 군		
성 주 군	10	
성주읍선거구	1	성주읍 일원
선남면선거구	1	선남면 일원
용암면선거구	1	용암면 일원
수륜면선거구	1	수륜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가천면선거구	1	가천면 일원
금수면선거구	1	금수면 일원
대가면선거구	1	대가면 일원
벽진면선거구	1	벽진면 일원
초전면선거구	1	초전면 일원
월항면선거구	1	월항면 일원
칠 곡 군		
칠 곡 군	9	
왜관읍제1선거구	1	왜관1리 ~ 8리, 왜관12 ~ 15리, 금산리, 낙산리, 금남리
왜관읍제2선거구	1	왜관9리~11리, 석전리, 매원리, 봉계리, 삼청리, 아곡리
지천면선거구	1	지천면 일원
동명면선거구	1	동명면 일원
가산면선거구	1	가산면 일원
석적면선거구	1	석적면 일원
북삼면선거구	1	북삼면 일원
약목면선거구	1	약목면 일원
기산면선거구	1	기산면 일원
예 천 군		
예 천 군	12	
예천읍선거구	1	예천읍 일원
용문면선거구	1	용문면 일원
상리면선거구	1	상리면 일원
하리면선거구	1	하리면 일원
감천면선거구	1	감천면 일원
보문면선거구	1	보문면 일원
호명면선거구	1	호명면 일원
유천면선거구	1	유천면 일원
용궁면선거구	1	용궁면 일원
개포면선거구	1	개포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지보면선거구 풍양면선거구	1 1	지보면 일원 풍양면 일원
봉 화 군		
봉 화 군	10	
봉화읍선거구 물야면선거구 봉성면선거구 법전면선거구 춘양면선거구 소천면선거구 석포면선거구 재산면선거구 명호면선거구 상운면선거구	1 1 1 1 1 1 1 1 1 1	봉화읍 일원 물야면 일원 봉성면 일원 법전면 일원 춘양면 일원 소천면 일원 석포면 일원 재산면 일원 명호면 일원 상운면 일원
울 진 군		
울 진 군	10	
울진읍선거구 평해읍선거구 북면선거구 서면선거구 근남면선거구 원남면선거구 기성면선거구 온정면선거구 죽변면선거구 후포면선거구	1 1 1 1 1 1 1 1 1 1	울진읍 일원 평해읍 일원 북면 일원 서면 일원 근남면 일원 원남면 일원 기성면 일원 온정면 일원 죽변면 일원 후포면 일원

선 거 구 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울 륙 군		
울 륙 군	7	
울륙읍선거구	4	울륙읍 일원
서면선거구	2	서면 일원
북면선거구	1	북면 일원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2. 4. 17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의 회기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수당(원격지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제7조제1항중 “회기수당은 출석일수1일에”를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
당”으로 하고, 제2항중 “49,300원”을 “54,300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의장·부의장 숙박료 (1야
당)란의 “41,000”을 “46,000”으로 하고, 의원 숙박료 (1야당)란의
“41,000”을 “46,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2. 4. 17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내지제3항을 동조제3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circ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4. 17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의 농수산분야 소관별란 농업기반과란 건명 제1호를 삭제한다.

축산과란 건명 제1호중 “보호종축의 지정”을 “보호가축의 지정·고시”로 하고, 건명 제2호, 제3호, 제17호, 제18호를 삭제하며, 건명 제20호 근거법령란중

“축산법 제16조”를 “축산법 제11조”로 하며,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축산과	24.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	시장·군수

해양수산과란 건명 제21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18호중 “2종어항”을 “지방어항”으로 하며, 제19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의 각 근거법령란중 “항만법 제15조 제1항”을 “항만법 제27조 제1항”으로, “동법 제10조”를 “동법 제9조 제2항”으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46조”로, “동법 제32조 제1항”을 “동법 제59조”로, “동법 제33조 제1항”을 “동법 제60조”로 하고, 제20호중 “사용료 부과징수”를 “사용료 부과징수 및 사용료 면제”로, “동법 제15조 제3항”을 “동법 제27조 제2항”으로 한다.

보건환경산업분야 소관별란 환경관리과란 건명 제6호중 “경보발령 지역내”를 “경보발령·해제 및”으로 하고, 근거법령란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2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로 한다.

수질보전과란중 건명 제2호, 제3호, 제6호를 삭제하고, 건명 제1호중 “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계속 설계시공할 시의”를 “설계·시공업자가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계속 설계·시공할 경우의”로 하며, 건명 제8호중 “불법공사 등에 대한 중지·변경”을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으로 한다.

사회복지여성분야 소관별란 사회복지과란중 건명 제1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건명 제2호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37조”를 “동법 제51조”로 하여 제1호로 한다.

가정복지과란중 건명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를 삭제하며, 건명 제4호 가목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15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로, 나목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13조”로 하여 제1호로 하며, 건명 제9호중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및 임원취임 승인”을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으로 하고,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14조 및 제37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로 하여 제2호로 한다.

여성정책과란 건명 제2호를 삭제하고, 건명 제3호중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및 임원취임 승인”을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으로 하고,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18조 및 제51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로 한다.

건설도시분야 소관별란 도시계획과란 건명 제3호의 주문중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도시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로 하며, 제9호중 “인가·고시·협의권(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와 제8호 각호의 시설은 제외)”을 “인가·고시·협의권”으로 하고, 제11호중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을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제3호에서 위임된 권한에 한함)”으로 하고, 제3호중 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 계획과	처.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소하천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17조	시장·군수 (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회
2002. 4. 17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 한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경상북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제4조(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중에서 경상북도관리야생동·식물(이하 “관리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4. 기타 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야생동·식물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명, 지정년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고시내용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야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기타 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관리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 도지사는 농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뿔·올무·차량 등에 의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보전

제7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생태계보전지역(이하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5.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지역
 6. 해조류, 어패류 등 수산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장 등으로서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해역, 하천 또는 호수 지역
- ②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당해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관할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증축(기존 건축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4.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하거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학술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중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상북도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역의 시

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에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을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 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제15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

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완충지역)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4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제18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해양 생태계의 서식 현황
 7.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 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해양 동·식물이 풍부한 해안지역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경상북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해안선, 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아생동·식물 등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8조(교육·홍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과 태 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류 인 희

2002. 4. 17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의 권리·의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을 “도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2장 제목중 “지방자치단체 및 도민의 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도민의 권리 및 의무)”을 “(도민의 권리)”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도민은”를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맑고 푸른 경북만들기의 민관 협력체인 경상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민간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
2. 경북의제21 실천 사업비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활동보고서(제167회 임시회)

2002. 5 인쇄 / 2002. 5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954-9855

FAX : 955-9185

<비매품>